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1월 14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5년 11월 18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담당관)

가. 제안이유

- 평창군 주요사업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집중 추진을 위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한시정원 : 현안사업추진과
 - 1) 존속기한 : 2024. 1. 1. ~ 2025. 12. 31.(2년)
 - 2) 연장기한 : 2026. 6. 30.(6개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유진)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5. 11. 14.
- 회부일자 : 2025. 11. 18.
- 상정일자 : 2025. 11. 25.

2. 제안이유

- 평창군 주요사업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집중 추진을 위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한시정원 : 현안사업추진과
 - 1) 존속기한 : 2024. 1. 1. ~ 2025. 12. 31.(2년)
 - 2) 연장기한 : 2026. 6. 30.(6개월)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입법의 취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한시기구인 현안사업추진과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존속기한을 6개월 연장하여 운영하려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중 한시기구인 현안사업추진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연장한다.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안사업추진과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평창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4
----------	-----

제출년월일 : 2025.11.1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 주요사업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집중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기구 : 현안사업추진과

1) 존속기한 : 2024. 1. 1. ~ 2025. 12. 31.(2년)

2) 연장기한 : 2026. 6. 30.(6개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5. 10. 2. ~ 2025. 10.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1446호, 행정담당관-23421(2025. 10. 1.)호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16817(2025. 10. 29.)호]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16817(2025. 10. 29.)호]
-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38719(2025. 10. 23.)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17347(2025. 11. 5.)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17900(2025. 11. 13.)호]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898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담당관 이시균
연락처	(033) 330 - 2210